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72484(본소), 2015가합74350(반소) 판결
[투자지분매매대금청구 · 정산금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41935(본소), 2016나2041942(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7248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1. A

2. B

피고(반소원고)C

변론 종결 2016. 5. 20.

판결 선고 2016. 6.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7,471,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2,8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47,471,000원, 원고 B에게 52,8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40,257,868원, 원고 B은 37,038,4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 및 E 5인(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13. 6. 14.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기도 파주시 F 건물 7층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자가 이루어져 그 지분비율이 정해졌다.

E	25%	266,750,000원
피고	20%	213,400,000원
원고 A	25%	266,750,000원
원고 B	20%	213,400,000원
D	10%	106,700,000원
계	100%	1,067,000,000원

다. 위 조합원 5인은 피고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였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2013. 6. 10.부터 식당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이후 위 식당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4. 4.경 1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재산적 가치를 2억 원으로 평가한 후 각 조합원별 실제 추가 출자금에 따라 지분비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이 600만 원, 피고가 2,000만 원, E이 2,500만 원, D이 1,0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합원들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정되었다.

E	25%	50,000,000원	28.736%	75,000,000원
피고	20%	40,000,000원	22.988%	60,000,000원
원고 A	25%	50,000,000원	19.157%	50,000,000원
원고 B	20%	40,000,000원	17.625%	46,000,000원
D	10%	20,000,000원	11.494%	30,000,000원
계	100%	200,000,000원	100%	26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지분매매에 관한 청약 및 승낙의 의사표시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0. 10. 원고 A에게 47,471,000원(원래 매매대금은 57,471,000원이지만 원고 A이 H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하여 위 금액이 되었다), 원고 B에게 52,875,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약정 및 출자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지분을 원고들로부터 모두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지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성명 기재란에 서명날인을 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각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각 지분의 매매(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약(이하 '이 사건 청약'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이 청약을 받고 이 사건 각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원고들의 서명날인을

한 후 2014. 10. 31.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위 매매에 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완성한 각 매매계약서가 피고에게 전달된 시기가 2014. 10. 31.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를 원고들로부터 2014. 11. 4.에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매매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2014. 11. 4.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청약 당시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청약 당시 승낙기간을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청약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 전부를 제3자인 H에게 매각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H의 이 사건 식당 인수의사가 유지되는 시점까지가 그 승낙기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를 대리한 I는 이 사건 청약 이전인 2014. 10. 4.경부터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전부를 H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H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상하였던 점, ② H는 위 협상과정에서 2014. 10. 8. 및 같은 달 9. 원고 B와 연락하였는데, 당시 원고 B은 H에게 위와 같은 식당 운영권 매각방안에 관하여 반대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이 원고 B이 위 매각방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H가 I에게 알리자, I는 H에게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 운영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원고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2), ④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H의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인수와 무관하게 또는 이를 특별히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청약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H의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인수를 전제로 이 사건 청약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청약 당시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라고 판단된다.

3) 원고들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가)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 것이고(민법 제529조), 이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에 관한 피고의 청약 당시까지 원고 A은 266,750,000원을, 원고 B은 219,400,000원(= 213,400,000원 + 6,000,000원)의 자금을 각 출자하였는데, 위 청약에서 원고들에게 제시된 지분의 처분대가는 원고 A에게 57,471,000원, 원고 B에게 52,875,000원에 불과하여, 원고들로서는 이를 받아들여야할지 그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그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들 및 피고 모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각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처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반대로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수하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 또는 타에 처분하는 방안을 두고 심사숙고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따라서 어느 방안이 더 자신에게 유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식당의 당시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그 영업실적이 향상될 수 있을지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예측이 필요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는 업무집행자인 피고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그 발생한 이익을 매월 지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재산상태 등 자료조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2014. 10. 10. 피고로부터 위 청약을 받은 후 그로부터 25일 후인 2014. 11. 4.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⑥ 그 후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그 승낙기간으로서의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한 후, 상당한 기간 이내인 2014. 11. 4.에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약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의 청약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위 청약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10, 11,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원고 A의 배우자인 J이 2014. 10. 29.경 위 청약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피고의 남편 I에게 보내기는 하였으나, J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위 문자메세지에서도 위 의견이 개인적 소견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청약하였을 때 기존 청약은 철회된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청약 이후 다시 2014. 10. 22. 그 매매대금을 변경하고 승낙기간을 2014. 10. 31.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지분을 매도할 것을 청약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청약은 철회·변경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22. 원고들에게 지분 매수대금을 이 사건 청약에서 정한 매수대금(원고 A: 57,471,000원, 원고 B: 52,875,000원)에 비하여 감축하고(원고 A: 47,892,500원, 원고 B: 44,062,500원), 그 승낙기간을 2014. 10. 31.로 정하여 다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약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고(민법 제527조),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약 당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청약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승낙기간인 상당한 기간 이전에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청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2014. 10. 22.자 변경된 청약을 받고 이 사건 청약의 철회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4. 10. 22.자 변경된 청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2014. 10. 31.경 받자마자 찢어버렸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청약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 A의 배우자인 J이 2014. 10. 29. 보낸 문자메세지를 원고들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청약 이후 그

승낙기간으로서의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가 새로운 청약을 다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승낙기간이 따로 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47,471,000원, 원고 B에게 52,8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매매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분이전의무는 원고들의 계약체결에 따른 지분이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587조 참조). 한편 원고들은 2010. 10. 1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청약한 사실만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된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논의하여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동업약정은 해지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위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큰 상황이고 이는 결국 피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위 소극재산인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4. 11. 4. 이 사건 각 매매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조합 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현재 원고들이 위 조합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손인희

판사유정희

1) 실제 기존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1,067,000,000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기존 투자금을 계산하였다.

2) [H와 I의 2014. 10. 10.자 대화 녹취록(을 제17호증의 3)]

H: 난리가 나, 어제 저녁에 전화와 가지고 난리가. 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그런 일이 반드시 내가 이루어질 거 같아 가지고, 괜히 친구지간에 금만 가버리잖아

I: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일단은 우리 주주 다섯 명들 다 포기각서 오늘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B하고 A은 제가 그 지분만큼 돈 해가지고 줘버리고.